

## 정신이상 항변과 적법절차조항 : 미국 연방대법원 Kahler v. Kansas<sup>1)</sup>

### 아메리칸 대학교 SJD과정 엄예은



Kahler v. Kansas 사건의 첫번째 변론 기일인 2019년 10월 8일  
연방대법원 앞에 방청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sup>2)</sup>

### 1. 요약

미국 판례법의 맥노튼 기준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정신이상 (insanity)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sup>3)</sup> 하나는 도덕적 불능(moral incapacity)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인지적 불능 (cognitive incapacity)에 관한 것으로 범행

1) Kahler v. Kansas, 140 S.Ct. 1021 (2020).

2) The Well News,

<https://www.thewellnews.com/justices-open-new-term-hearing-challenge-to-kansas-lack-of-insanity-defense/>

3) M'Naghten's Case, 8 Eng. Rep. 718 (1843)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형사책임의 면책에 대한 각 주의 법을 그 요소별로 자세히 분석하면 맥나튼 법칙 (M'Naghten Rule), 불가항력적 충동 법칙(Irresistible Impulse Test), 모범 형법전 원칙 (Model Penal Code Test)과 더럼 법칙 (Durham Rule)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상고인은 맥나튼 법칙을 근거로 하여 변론을 펼쳤다).

당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피상고인 캔자스 주는 인지적 불능 테스트를 채택하고 있으며 도덕적 불능에 대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행동기를 형성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만 입증된다면 도덕적 불능과 관계없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sup>4)</sup> 정신질환의 유무가 형량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국 피고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지적 불능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상고인 James K. Kahler는 도덕적 불능에 따른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을 허용하지 않는 캔자스 법<sup>5)</sup>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에 어긋난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sup>6)</sup> 연방대법원은 2020년 3월 23일 최종 선고에서 “캔자스 주의 법은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재판관 여섯 명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적법절차조항은 주(洲) 법원에게 도덕적 불능을 근거로 하는 형사책임 면책의 법리를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2. 배경

미국 대다수의 주는 1843년의 M’Naghten’s Case 판결을 따라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도덕적 또는 인지적 판단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무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이 두 가지 기본 요소에 의지적 불능(volitional incapacity)을 추가하는 주도 늘어났다. 의지적 불능이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불가항력적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캔자스 주 외에 유타, 알래스카, 아이다호, 몬타나 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다른 주의 형사재판에서는 인지적

4) Kan. Stat. Ann. § 21-5209.

5) 캔자스 주 성문법 § 21-5209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피고인은 범행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면책받지만 그 외 정신질환적 특성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6) 적법절차 원칙은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연방정부에 적용되고, 제14조에 의해 주정부에 적용된다.

7) Alaska Stat. §§ 12.47.010(a), 12.47.020 (2018); Idaho Code Ann. §§ 18-207(1), (3) (2016); Mont. Code Ann. § 46-14-102 (2019); Utah Code § 76-2-305 (2017).

불능과 도덕적 불능 둘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해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위 다섯 개 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법리를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신이상 항변의 전통적 두 축인 도덕적 불능과 인지적 불능에 대한 해석의 자유가 주정부에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채택하는 것이 적법절차조항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점이다. 또 다른 시점에서는, 미국 형법상 도덕적 불능이 정신이상 항변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인지를 가늠케 하는 판결이기도 하다.

### 3. 사건 개요

상고인은 아내와 두 자녀 등 네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신청한 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자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가 머물고 있던 곳에 찾아가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이었다. 1심에서 상고인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신상태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캔자스 주 형법이 헌법 제14조 적법 절차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정신 질환의 증거를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만 허용했다. 1심 재판의 배심원은 총 네 명의 살해혐의를 인정하여 상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그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캔자스 주 법의 위헌성에 대한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항소심에서 캔자스 주 최고법원은 어느 한 형태의 정신이상 항변만을 특정하여 그 것을 사법 제도의 근본적 법리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은 각 주에게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특정한 법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sup>8)</sup> 항소는 기각되어 사형선고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상고인은 캔자스 주 형법의 위헌성을 또다시 문제 삼으며 연방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하였다.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모든 주는 도덕적 불능을 사유로 한 정신이상 항변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고인의 주장이었다. 연

---

8) State v. Kahler, 307 Kan. 374 (2018).

방대법원은 도덕적 불능이 형사책임의 면책 사유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적법절차 조항에 비추어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sup>9)</sup>

#### 4. 판결 요지

적법절차조항은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캔자스 주 형법의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이 미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sup>10)</sup> 그러한 판단을 위해 법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역사적 관례이다. 초기 관습법 문서 및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도덕적 불능이 정신이상 항변의 근본적인 원칙이라면 주정부가 이를 재해석하거나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극히 드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체적으로 형사 범죄에 대한 개념화는 각 주의 재량에 맡겨진다.<sup>11)</sup>

재판부는 먼저 정신이상 항변의 원칙이 관습법의 시초에서부터 형성된 가장 근본적인 법적 원칙이라는 상고인의 주장에 동의한다.<sup>12)</sup> 그러나 여기서 상고인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형식의 정신이상 항변 법이다. 캔자스 주는 상고인이 요구하는 형식의 정신이상 항변을 인정하지 않을 뿐 정신이상 항변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캔자스 주법에 따르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피고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인지적 불능 상태의 가해자는 의도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캔자스 주는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형량 조정을 허용

9) 다수의견과 대조되는 재판관 Breyer 포함 세 명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인지적 불능은 면책의 사유로 인정하면서 도덕적 불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보호받는 범위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캔자스 주의 법은 정신이상 항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같은 정신이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주의 구분에 따라 어떤 이는 면책을, 어떤 이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 만일 관습이나 규칙이 ‘우리 국민들의 전통과 양심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 근본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justice so rooted in the traditions and conscience of our people as to be ranked as fundamental)을 위반하는 경우 적법절차조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Snyder v. Massachusetts, 291 U.S. 97, 105 (1934); Leland v. Oregon, 343 U.S. 790 (1952).

‘미국 사법제도에 근본적인’(fundamental to the American scheme of justice) 권리장전 조항은 수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을 통해 주(州)에도 적용된다. Duncan v. Louisiana, 391 U. S. 145, 148-150 (1968).

11) Clark v. Arizona, 548 U.S. 735, 752 (2006).

12) 4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24 (1769).

하고 있다. 캔자스 주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항변 법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여러 요인들을 자유롭게 주장하여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즉, 인지적 불능 외에 도덕적 불능 및 기타 정신적 질환의 증거는 피고인의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판사가 정신 질환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정신치료 시설 수용을 명령할 수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도덕적 불능을 사유로 한 정신이상 항변을 인정하는 다른 주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캔자스 주는 정신이상 항변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고인의 ‘정신이상 항변 법의 폐지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인이 승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법절차조항이 특정 유형의 정신이상 항변을 요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덕적 불능이 정신이상 항변의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도덕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여 자신이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캔자스 주의 정신이상 항변 법은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습법을 공부한 초기 학자들은 정신이상 항변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했다. 한편에서는 도덕적 불능 테스트를, 다른 한편에서는 범의(*mens rea*, 犯意) 기반의 인지적 불능 접근을 선호했다. William Lambard와 같은 학자는 중요한 정신질환적 특징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능력의 부재를 지목한 반면 Henry de Bracton을 포함한 여러 학자는 피고인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가 그 행동을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기 판례를 살펴보면 도덕적 불능보다 인지적 불능에 무게를 둔 판결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Rex v. Arnold* 사건은 Henry de Bracton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wild beast’와 같으므로 처벌을 면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sup>13)</sup> 이와 같은 논지의 판결들은 공

통적으로 인지적 영역과 범의를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었고 도덕적 불능은 인지적 불능 상태에 대한 작용으로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sup>14)</sup> 또한, 피고인의 도덕적 불능은 그 자체로서 형사책임의 면책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범의가 부족하다는 것의 증거는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인은 특히 Hadfield 판결에 기대어 캔자스 주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판결 또한 상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sup>15)</sup> Hadfield 판결은 도덕적 불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인지적인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이상 항변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즉, 초기 관습법 판례 중 상고인의 주장처럼 도덕적 불능을 선호하거나 그것을 정신이상 항변의 독립적 근거로 해석하는 판례는 찾을 수 없다.

법원이 처음으로 도덕적 불능 자체만을 정신이상 항변의 충분한 근거로 인정한 판결은 맥노튼 판결이다. 맥노튼 법칙이라 일컬어지는 이 판결에서 법원은 “도덕적 불능 또는 인지적 불능을 증명한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였다.<sup>16)</sup> 그러나 이 판결 후에 모든 주가 맥노튼 법칙을 그 내용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주는 의지적 불능이 도덕적 불능보다 더 실용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고(아이오와, *State v. Felter*, 1868) 또 어떤 주는 도덕적 불능 대신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정신이상 항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뉴햄프셔, *State v. Pike*, 1870). 맥노튼 법칙을 채택한 주도 도덕적 불능의 의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다수의 주가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도덕적 역량이라고 정의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16개의 주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자각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의 변화로 인해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정신이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

13) *Rex v. Arnold*, 16 How. St. Tr. 695 (1724).

14) *Bellingham's Case*, 1 G. Collinson, *Treatise on the Law Concerning Idiots, Lunatics, and Other Persons Non Compotes Mentis* 636, 671 (1812).

15) *Hadfield's Case*, 27 How. St. Tr. 1281 (1800).

16) *M'Naghten's Case*, 8 Eng. Rep. 718 (1843).

맥노튼 법칙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형사법 제도의 근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맥노튼 판결 이후의 여러 변화들 속에서 도덕적 불능 기준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 나아가, 도덕적 불능 기준을 헌법화하는 것은 캔자스 주를 포함한 다섯 개 주의 정신이상 항변 법을 무력화할 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자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16개 주의 법을 폐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캔자스 주의 법에 대하여 위헌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매우 강력하고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지만 법무부와 미국 의사협회는 오히려 캔자스 주의 범의(mens rea) 기반 정신이상 항변 법을 선호하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sup>17)</sup>

큰 맥락에서 보면 특정 유형의 정신이상 항변 법의 헌법화는 법과 정신의학의 발전적 논의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형사책임과 정신질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뇌 활동, 형법의 목적,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해석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는 새로운 의학적 지식이 발견될 때마다 그에 맞추어 법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논지를 표한 바 있다.<sup>18)</sup>

따라서 재판부는 캔자스 주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정신이상 항변 법을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상고인의 주장과 달리 캔자스 주는 정신이상 항변 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상고인이 요구하는 특정 유형의 정신이상 항변 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어떤 내용의 정신이상 항변 법을 채택할 것인지는 캔자스 주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 5. 결론

맥노튼 판결 이후 도덕적 불능과 인지적 불능은 정신이상에 따른 형사책임

---

17) United States v. Pohlott, 827 F.2d 889, 899 (1987).

18) Clark v. Arizona, 548 U.S. 735 (2006); Leland v. Oregon, 343 U.S. 790 (1952); Powell v. Texas, 392 U.S. 514 (1968).

면책 법리의 중요한 틀로 기능했다. 그러나 수 십년이 지난 지금, 많은 수의 주가 여러 다양한 정신질환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정신이상 항변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이상 항변의 법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이번 판결은 도덕적 불능이 적법절차조항의 영향 하에 있는 근본적인 법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캔자스 주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렇다면 적법절차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정신이상 항변의 근본적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연방대법원은 어느 특정 요소를 지목하여 강조하는 것 자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법리는 그 특성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학적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